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 강성국님

접 수 일 자	2022. 8. 30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1. EBS심의위원회 명단(성명, 직업 및 소속·직책, 임기 포함) 2.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EIDF) 상영작 '방송불가' 결정이 있었던 8월 23일 EBS심의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일체(녹취록이 존재하는 경우 녹취 파일 포함)			
공 개 내 용	첨부 참조			
비 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비공개)		
	교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소포발송)		
공 개 일 시(기간)	-	공 개 장 소	-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수료산정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 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09월 8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의 장)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인</p>				
				
기안자 사원 이종호	검토자 부 장 전상욱	결재권자 센터장 김기홍		
<p>시 행 운영관리부- 1335</p> <p>우135-854/ 주소: 경기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www.ebs.co.kr</p> <p>전화(526-2421) /전송(526-2439) /담당자: dannis@ebs.co.kr /공개구분 :</p>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답변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1. EBS심의위원회 명단(성명, 직업 및 소속·직책, 임기 포함)
2.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EIDF) 상영작 <금정굴 이야기> ‘방송불가’ 결정이 있었던 8월 23일 EBS심의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일체(녹취록이 존재하는 경우 녹취 파일 포함)

상기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EBS 심의위원회 명단

- EBS 프로그램 심의는 심의·시청자실에 소속된 경력 25년 이상의 직원이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
- EBS 심의·시청자실 심의위원 명단

성명	직책	비고
김 현	심의·시청자실 실장	EBS 직원
김 민	심의·시청자실 소속 심의위원(수석급)	EBS 직원
김혜영	심의·시청자실 소속 심의위원(수석급)	EBS 직원
류현위	심의·시청자실 소속 심의위원(수석급)	EBS 직원
손복희	심의·시청자실 소속 심의위원(수석급)	EBS 직원
송선자	심의·시청자실 소속 심의위원(수석급)	EBS 직원
유무영	심의·시청자실 소속 심의위원(수석급)	EBS 직원
최혜경	심의·시청자실 소속 심의위원(수석급)	EBS 직원

2. ‘금정굴이야기’ 관련 EBS심의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일체

- ‘특별합동심의’의 회의록 및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음.
- ‘특별합동심의’ 결과

프로그램명	2022 EIDF 단편화첩-금정굴 이야기	방송채널 및 방송시간	지상파 1TV 2022. 8. 28.(일) 22:50 ~ 23:15
제작	2022 EIDF 단편화첩 (전승일 감독)	심의일	2022. 8. 22.(월)
심의	실 장 : 김 현 심의위원 : 김 민, 김혜영, 류현위, 손복희, 송선자, 유무영, 최혜경		

[심의 결과]

심의·시청자실 특별합동심의 전체회의 결과, 상기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및 제14조(객관성)에 명시한 심의 기준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점에서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심의 결과를 전달합니다.

[심의 총평]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에 따르면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프로그램은 시작하면서 ‘이 영화는 1950년 고양시 금정굴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실화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영상 구성이나 자막에 있어서 연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학살의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 시청자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음.
-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역사적 해석과 관점이 다양한 상황이므로 특히 그 어떤 지상파 TV 프로그램보다 방송심의규정에서 제시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함.
- 또한, 당시 시대적 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객관적 자료 제시나 데이터에 대한 출처 표시 등이 부족한 점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불충분한 점이 있음.
- 이상과 같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사유로 지상파TV로 방송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음.